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?



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
 - 성폭력·성매매피해자
 -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

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?



유출 입증자료

-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(금융기관 확인서)
-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(예: 판결문 등)

피해를 입은 경우

- 생명·신체: 진료기록부, 진단서 등
- 재산: 금융거래내역서 등
- 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: 상담사실 확인서,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

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
-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(예: 녹취록, 진술서 등)

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?



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
번호 변경 신청


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
심의를 거쳐
주민등록번호 변경

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

생년월일(6), 성별(1)을 제외한
지역번호(4), 등록순서(1), 검증번호(1) **변경!**



870313-1 *****

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 순서 검증 번호

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?



변경후 복지, 세금, 건강보험 등의 행정(공공)기관은
“자동 변경”

은행·보험·통신 등 민간기관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
“직접 변경 신청”